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225 발의연월일: 2023. 7. 13.

발 의 자:이만희·태영호·오영환

백종헌 • 이인선 • 허은아

이태규 · 조은희 · 배준영

박성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농작물 등의 피해금 액은 포함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농산어촌과 도시와의 형평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실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산어촌지역의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는 피해액에 산정되지 않아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되며 국비 지원 및 각종 해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제5항에 피해상황 조사의 방법, 기준 및 피해금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대통령령에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 해를 피해액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농산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

법률 제 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5항 중 "방법 및 기준 등"을 "방법, 기준 및 피해금액의 산정 등에"로, "중앙대책본부장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8조(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	제58조(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
① ~ ④ (생 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	⑤
해상황 조사의 <u>방법 및 기준</u>	<u>방법, 기준 및 피</u>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	해금액의 산정 등에
<u>부장이</u> 정한다.	대통령령으로